

관세평가

【문제 1】 아래의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우리나라 소재 법인 수입자(구매자) K는 미국 소재 법인 수출자(판매자) A로부터 원유를 구매하였다. K는 A로부터 송부받은 해당 원유의 송품장 가격을 근거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하였다. 수입자(구매자) K 및 수출자(판매자) A는 미국 소재 다국적 회사인 M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률상 지배를 받는다.

물음 1) 상기 거래내용에서 A가 발행한 송품장 가격을 관세평가상 거래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배제조건) 4가지를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관세평가상 거래가격의 구성요소(범위)를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 및 WTO관세평가협정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3) 상기 거래내용에서 K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요건)를 관세법·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7점)

물음 4) 상기 거래내용에서 K가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요건)를 관세법·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8점)

【문제 2】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물음 1)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설명하시오. (3점)

물음 2)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서 규정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8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설명하시오. (3점)

물음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서 규정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설명하시오. (4점)

【문제 3】 지급된 권리사용료가 관세법상 ‘거래조건성’과 ‘물품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며,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간주되어, 과세당국이 당해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 위해 고안된 설비 등에 한함)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한 사실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권리사용료 가산 방법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물음 1) 가산 원칙(안분 방법)을 쓰시오. (5점)

물음 2) 조정액 산출식(장기간 반복되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을 쓰시오. (3점)

물음 3) 가산율 산출식(장기간 반복되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을 쓰시오. (2점)

【문제 4】 아래의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권리사용의 계약 및 이행
한국에 소재하는 국내 게임CD 판매업자 K사는 일본 J사에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권리사용료(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마스터CD 제작 비용)를 지불하였고, J사는 개발한 게임을 ‘마스터CD’에 수록한 후 K사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C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구매계약의 성립 및 이행
K사는 C사와 마스터CD 복제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 C사로부터 게임CD 복제물 00개를 구매하기로 하고, 제조(복제) 비용으로 XX를 지불하였으며, 마스터CD를 게임CD에 동일한 형태로 재현할 공정에 사용될 CD Stamper(압인기)의 제조비용으로 YY를 별도로 지불하였다.
- 마스터CD는 게임CD 복제 생산에 필요하며, 마스터CD 없이는 게임이 수록된 게임CD의 제작이 불가능하다.



물음 1) 수입시 ‘실제지급금액’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점)

물음 2) 지불된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법령상 가산여부를 검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7점)

【문제 5】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결제 방식: 신용장 조건)하여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최초 수입자가 부도로 대금지급을 못하자, 당해 거래 신용장개설은행(대한민국 소재)이 L/C대금을 대지급한 후, B/L 양도 방식으로 국내 제3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당해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입 통관할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관세법령상 인정받을 수 있는 과세가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6】 아래의 협정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0점)

- 1995년 1월 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의 부속서인 ‘WTO관세평가협정’의 공식적인 명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하 ‘협정’)이다.
- 이 ‘협정’의 부속서 I 주해(ANNEX I INTERPRETATIVE NOTES)에서는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불할 가격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부가금액 및 비용은 관세가격(The customs value =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음 1) 관세법령상 ‘실제지급금액’에서 제외가 인정되는 비용을 모두 쓰시오. (4점)

물음 2) 현행 관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동 ‘협정’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가금액(비용)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관세법령상 ‘요건’을 모두 쓰시오. (3점)

물음 3) 당해 질문에서 언급된 ‘부가금액 및 비용’을 제외한 과세가격 신고 시 적용될 ‘통화’와 ‘과세환율’에 대한 관세법령상 규정을 쓰시오. (3점)